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7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6.

3. 회 부 일 : 2025. 1. 17.

II. 제안이유

지구별수협외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조직된 어촌계는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의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활동비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 제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¹⁾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조직²⁾하는 자치단체로,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총 2,067개소의

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어촌계(계원 108,127명)가 조직되어 있음.

- 어촌계는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어촌계장은 이러한 어촌계의 대표로서 어촌계의 업무를 집행하는 한편, 어촌 내에서 정부 정책 전달, 수산업 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등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활동비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어촌계장과 같이 지역 내 자치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월 40만원 내외의 수당을 수령³⁾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어촌계장에게도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⁴⁾.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

4)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해양수산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제19대: 「수산업협동

개정안 역시 이러한 취지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되며, 어촌계장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여 그 활동을 보조하고, 어촌계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어촌계장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⁵⁾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임명되어 국가가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통장·이장과 달리 어업인들의 자조 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내 직위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관계 부처에서 예산 지급주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현재 상당수의 지구별 수협(70개 지구별수협 중 56개)에서 정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어촌계장에게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481,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제20대: 의안번호 2023554,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 제21대: 의안번호 2101488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179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5)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③ (생략)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구별수협 의 어촌계장 활동수당 지급 현황('24.9월 기준)]

구분	계	미지급	10만원이하	10~30만원	30만원이상
조합수	70	14	5	40	11
비율(%)	100	20.0	7.1	57.1	15.7

주 * 미지급 조합(14개) : 영흥, 강원 고성군, 대포, 안면도, 대천서부, 김제, 강진군, 신안군, 완도 소안, 거문도, 부산시, 추자도, 한림, 모슬포수협

** 매월 지급(49개), 분기 지급(4개), 기타(연 6회 1개, 반기 1개, 연 1회 1개)

자료: 해양수산부

□ 예산지급주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어촌계가 어촌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권자이므로 수당지급도 통장·이장의 경우에 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는 활동비 지급 주체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수협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어촌계장의 행정에 대한 기여도, 직위의 성격 및 수당 지급 주체를 정부와 지자체 중 어디로 할 것인지 여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제21대 국회의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어촌계장의 행정업무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수협 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통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어촌계장의 권한이 많고 한 어촌계장이 장기간 재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촌계장의 연임 제한 등 안전장치를 추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422

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제2차회의(2021.3.24.) 회의록

참고	어촌계 일반 현황
-----------	------------------

□ 개 요

- (목적)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 도모
- (성격) 수협법 제15조에 따라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

□ 지역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수

- '24년 어촌계 통계조사 결과, '23년말 기준 전국 어촌계는 2,067개, 어촌계원은 108,127명으로 어촌계당 평균 구성원은 약 52명임

구 분	합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어촌계 (개)	2,067	51	60	29	54	74	174	65	872	147	439	102
계원수 (명)	108,127	3,460	6,365	1,807	3,903	3,276	13,387	6,311	40,594	4,615	16,825	7,584

□ 어촌계 설립절차

구 분		주요내용
①발기인 구성		○ 지구별수협 조합원 10인 이상(도서지역의 경우 5인 이상)
②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재적 발기인 과반수 이상 찬성
③창립총회 개최		○ 설립 준비위원회에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 찬성
④설립인가신청	구비서류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구역 및 어장 약도
	인가권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

□ 어촌계 가입요건

-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 * 조합원 자격 : 조합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고, 1년에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